

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2년 5월 25일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년 5월 8일 평창군수(기획실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2년 5월 14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2002년 5월 14일 회부 제94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02년 5월15일)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기획실장 권순철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에 근거한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2000.3.2일 부터 시행되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
- 주민들의 자치참여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청구인수를 조정

나.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 하향조정
- 주민의 수 : 350명 → 200명(감 150명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태영)

-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

-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350명 이상으로 정하여 그간 운영하여 왔으나 청구인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.
-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청구인수를 대폭 줄이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. 끝 .